

질문

접수번호

118113

이름

이*훈

상담분류

기타

제목

Q 무조사, 무근거, 경합위반 중 중대한 위반을 배제, 주택과의 위법행정을 감사 촉구

공개여부

공개

개인정보동의

동의

조회수

34

작성일

2025-07-14

첨부파일

내용

○ 감사위원회에 배정해주세요.

본 민원은 시민의창-118046(2025.7.10.) "조사 없이 과태료 부과통지 공문을 발송한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의 후속 민원으로서, 주택과의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오류에 대해 추가로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원 취지) 본인은 도램마을14단지의 2020년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주택과가 아래

와 같은 중대한 행정법령 위반을 범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요청 배경) 도램마을14단지는 2020년 약 4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전체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당초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 직권조사에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감경되었고, 처분이 유보되었습니다.(주택과는 위법하여 무권대리를 인정함)

2025년 조사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 위반(과태료 200만원 해당)”이 새롭게 적발되었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주택과-1363, 2025.1.15.),

주택과는 “이 중 더 경미한” 지침 위반 100만원만을 최종 과태료로 부과하고,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위반(과태료 2백만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위반이라 통보했는데, 주택과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작임. 장기수선계획 관련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본인과 주택과가 의견 일치함.

○(주요 쟁점)

가.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장충금 집행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위반
공사 전 장기수선계획에는 해당 시점에 옥상방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계획 변경 없이 공사 강행 및 집행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국토부·LH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위반

※ 즉, 장기수선계획 공사 부적정을 사유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임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 시행령 별표9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위반

하나의 행위(공사 집행)로부터 두 가지 위반이 발생

- ① 장기수선계획 미검토 (감경 사유 없어 그대로 200만원)
- ②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감경하여 100만원)

따라서, 위의 시행령 [별표9]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더 중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주택과는 이미 감경 유보된 지침 위반을 부활시켜 100만원 부과하고, 더 중한 위반(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 위반)을 배제하였습니다.

다. 행정의 공정성·신뢰보호 원칙 위반: 과거 감경 후 유보된 사안을 2년 뒤 ‘부활’시켜 부과한 것은 사실상 소급처분입니다.

○(요청사항) 아래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직권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요청합니다.

1. 주택과의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시행령 별표9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위반 여부
2. 2023년도 조사 결과의 유보 처리와 2025년 부과 행위가 행정확정력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 여부

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행정청 또는 관계자에 대한 주의, 시정요구, 징계요구 등 조치를 요청합니다.

☰ 목록

🔧 수정

🗑️ 삭제